

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

2024. 12. 23.

은행연합회

1. 추진배경 및 방안

- ◇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추진
- ◇ 기존 정부의 금융지원방안(7.3 종합대책 등)을 보강하여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
- ◇ 은행의 고객 및 본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 원칙

<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개요(12.5일,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) >

	정책자금	민간(은행)대출
정 상	“금융지원 3종 세트”(7.3 대책) ① 3종 세트 대상 확대 ② 성실상환자 추가자금 공급	① 연체전 채무조정 ③ 상생보증 대출
연 체	새출발기금 채무조정(7.3 대책) +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자금지원(10.22. 발표)	④ 컨설팅 제공
폐 업	폐업자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을 우대 (7.3 대책) ③ 새출발기금 연계 교육 과정 확대 + 신속한 채무조정 유도	② 폐업자 채무조정
재 기	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+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→ “새출발희망프로젝트”(7.3 대책) ④ 중기부-고용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간 신속 연계 및 편의 제고	

-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* 등을 통해 큰 폭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,
 - * 원금조정(60~80%), 금리감면, 상환기간 연장, 거치기간 부여, 추심중단 등
- 성실상환 중인 폐업예정자,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등은 다소 부족
-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,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·장기분할상환, 성실상환자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 및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였음

2. 주요 경과

- 정부의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(7.3.)」 안착과 보강을 위한 은행권 동참 방안 검토('24.下~)
- 「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」 관련 은행장 간담회(11.25.)
- 민생토론회 시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(은행연합회장, 12.2.)
-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TF 킥오프 회의 및 실무 TF 운영(12.4.~, 총 20여회)

3. 추진 내용

1

맞춤형 채무조정^[가칭119plus]

◆ 정상 차주라도 향후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
소상공인 개별 상황에 맞춰 장기분할상환 전환(최장 10년), 만기연장,
상환스케줄 조정 등 “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” 지원

□ (개요) 기존 ‘개인사업자대출119*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연체우려차주
(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이전 단계)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
선제적 채무조정 도모

*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체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

□ (지원대상) ^[기존]개인사업자 → ^[확대]개인사업자*, 법인 소상공인*

* 이하 ‘소상공인’으로 통칭

○ (i)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차주로
(ii)주업종이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,
유흥주점업 등이 아닌 업종인 (iii)소상공인 판단기준을 만족
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차주

— (i)지원대상 요건 부합 차주 : ①연체우려 차주, ②휴업 등 채무적
곤란 차주, ③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, ④기타 은행이
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주

※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세부요건(은행권 공동 적용기준)

□ 연체우려 개인사업자 요건(아래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연체 우려 차주로 간주)

○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(10등급 기준) 상 6등급* 이하 개인기업

* 각 은행마다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상 6등급에 매칭되는 신용등급은 상이할 수 있음

○ 대표자가 저소득(연소득 3,500만원 이하) 또는 저신용(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
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용평점)인 개인기업

○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개인기업

○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개인기업

□ **연체우려 법인 소상공인 요건**(아래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연체 우려 차주로 간주)

-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*(10등급 기준) 상 6등급 이하 법인기업(재무정보 제출기업 限*)
* 각 은행마다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상 6등급에 매칭되는 신용등급은 상이할 수 있음
** 은행에 재무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'SOHO형 소법인'은 '법인용 신용등급'이 존재하지 않으므로,
아래 4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연체우려 법인 소상공인으로 간주
-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법인기업
-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법인기업
- 최근 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법인기업
- 영업이익이 (-)인 법인기업

- (ii) **업종** :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, 유흥주점업 등 일부 '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'은 제외
- (iii) **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 규모** : ❶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, ❷ 전년도 총자산 10억원 미만, ❸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 (❶·❷·❸ 기준 모두 충족 요건)

□ **(대상채무)** 차주가 거래 은행에 보유 중인 사업자대출(신용, 담보, 보증)

- 단, 가계대출, 외화대출, 이자 선취대출,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, 파생상품 관련 대출은 지원대출에서 제외
※ 단, 보증기관 보증서 담보대출, 정책자금대출(정책기관 직접대출·대리대출, 지자체 협약대출 등)은 관계기관 동의를 전제로 지원 가능

□ **(지원내용)** 단순 만기연장이 아닌 채무를 나눠 갚는 '장기분할상환'을 확대하고, '지원대상 차주'의 대출 상환구조 및 수요를 반영한 채무조정 (❶ 장기분할상환, ❷ 만기연장, ❸ 상환일정 조정, ❹ 금리감면) 지원

- ① **장기분할상환 대환** :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상채무를 최장 10년 (신용 최장 5년 이내, 담보 최장 10년 이내) 이하의 은행권 공동 신규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

- (대출기간 및 상환방식) 최장 10년(신용 5년, 담보 10년) / 원금분할상환
- (대출금리) 차주가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산출
- (대출한도 및 중도상환수수료) 기존 대출한도 이내 / 중도상환수수료(기존, 신규) 면제

- ② 만기연장 : 일시상환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, 연장 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
- ③ 상환스케줄 조정 : 분할상환 원금 납입에 대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경우,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(담보는 최장 3년, 신용은 최장 1년)을 부여하고 거치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
- ④ 금리감면 : 연체 발생, 매출 하락 등으로 신용등급이 악화되더라도 은행은 채무조정(장기분할상환·만기연장 등) 시 적용금리가 기존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감면(※시행일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)

< 지원방식 개요도 >			
구 분		차주 선택	지원방안
담보대출	일시상환 대출	만기연장	1년 기간연장
		OR	
	분할상환 대출*	장기분할상환 대환	최장 10년 분할상환(거치 최장 3년)
		장기분할상환 대환	최장 10년 분할상환(거치 최장 3년)
신용대출	일시상환 대출	만기연장	1년 기간연장
		OR	
	분할상환 대출*	장기분할상환 대환	최장 5년 분할상환(거치 최장 1년)
		장기분할상환 대환	최장 5년 분할상환(거치 최장 1년)

* 분할상환대출 상환기간 조정 가능(거치기간(담보 최장 3년 신용 최장 1년) 부여 후 만기도 거치기간만큼 연장)
 ※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 등을 개별 확인한 후 진행

□ (시행시기) 모범규준 개정, 전산작업 등을 거쳐 '25년 3~4월중 시행

2

폐업자 지원

◆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“폐업자 저금리·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” 도입

□ (대상)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*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·보증(지역신용보증재단)·담보부 대출

*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

※ 동 프로그램 지원방안 발표일('24.12.23.)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

○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에서 기존 보증서 갱신 발급을 전제로 은행에서 대환 취급 가능

□ (만기) 최장 30년 이내 차주 자율 선택(잔액별·담보별 지원내용 상이)

○ 상환유예(최대 1년) 또는 거치(최대 2년) 가능

□ (금리)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% 수준*(잔액별, 담보별로 지원내용 상이)

* 현행 개인사업자대출(신용) 평균금리 약 6% 수준에서 3% 수준으로 조정

○ 은행별 ‘금융채 5년물(12.19일, 3.055%)+0.1%p’로 운영(5년 변동)

○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< 잔액별·담보별 금리 및 만기 >

구분	잔액	금리	분할상환(만기)
신용	1억원 이하	금융채 5년물+0.1%p	최대 30년
	1억원 초과*	금리지원 없음	최대 10년
보증	1억원 이하	금융채 5년물+0.1%p	최대 7년
	1억원 초과*	금리지원 없음	최대 5년
담보	1억원 이하	사업자대출→ 가게	10년~30년***
	1억원 초과	대출로 전환됨에 따라 가계담보대출 금리 적용**	

* 잔액이 1억원 초과하는 고액 대출(예: 2억원)의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음

** 개인사업자 담보대출(3.99~11.24%) vs. 가게 분할상환 주담대(3.37~4.54%)

***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30년 적용도 가능

□ (대출조건)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 대출(자행·타행 불문)을 받는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

□ (신청기간) 동 프로그램 지원방안 시행일부터 3년간 신청

□ (고용 등 연계)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(고용부), 희망리턴 패키지(중기부) 연계 등을 통해 폐업사업자의 안정적 퇴로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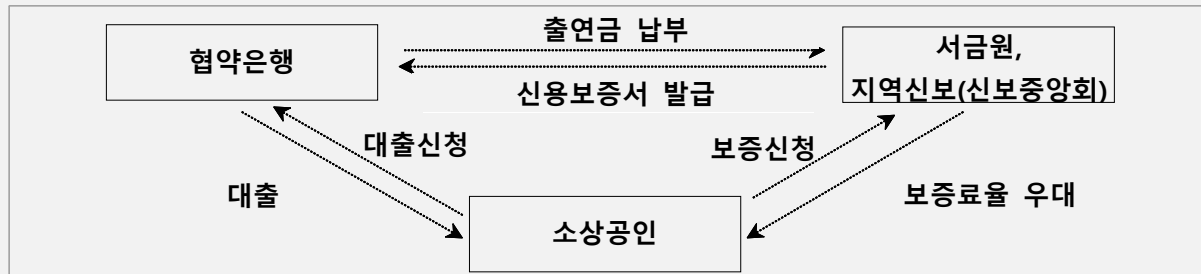
□ (시행시기) 모범규준 개정, 전산작업 등을 거쳐 '25년 3~4월중 시행

3

상생 보증·대출

◆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“소상공인 상생 보증·대출” 출시

⇒ 은행권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, 직접 심사를 통해 건전성 강화



3-1. 햇살론119 :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보증부대출

□ (개요) 은행-서금원 간 협약보증을 통해,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보증부대출로 신규자금 공급

□ (지원대상) 은행권 「(가칭) 119Plus 프로그램*」을 성실히**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

*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출시 예정('25년)

** 채무조정 방식별 성실상환 기준

채무조정 방식	성실상환 기준
장기분할상환,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	3개월 이상 이행
그 외 방식(일반 만기연장, 이자 감면 등)	6개월 이상 이행

※ 단순 거치기간 부여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(대출금리) 연 6~7% 수준 (보증료율 0.5%p 포함)

※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(컨설팅 연계 등을 통한 우대금리 가능)

□ (대출한도) 최대 2천만원 (신규1천만원 → 복합상담* → 추가1천만원)

*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이용 가능하며,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금원 금융교육, 컨설팅 등을 이수할 필요

□ (상환방식) 최대 5년 분할상환(1년 거치 포함)

□ (보증방식) 위탁보증(보증비율 95%)

□ (소요재원) 연간 출연규모 약 1,000억원(3년간 약 3,000억원)

□ (출연방식) 개별출연 (운용배수 : 6배 이상 예상)

※ 서금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수납

- ☐ **(출연액 분담기준)** 지역신보법 상 법정출연금 출연기준 대출잔액의 은행별 점유율에 따라 연간 1,000억원 분담(3년간 총 3,000억원)
- ☐ **(공급규모)** 연간 3만명, 대출액 6,000억원
- ☐ **(시행시기)** '25.4월*
* 은행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출시일정 변동 가능

3-2. 소상공인 성장up 보증대출

- ☐ **(개요)** 은행이 출연하고 은행이 심사하는 위탁보증으로,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자금 지원
- ☐ **(지원대상)**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, 경쟁력 강화(수익성·매출액 증대)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
 - 단,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운전자금 비중은 50% 초과 불가
- ☐ **(대출금리)** 보증부 대출인만큼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(보증료율 0.8%)
 - 고객별 실제 금리는 개별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
- ☐ **(대출한도)** 개인사업자 5천만원, 법인 소상공인 1억원
* 기존 상품의 한도와 별도로 산정하되, 보증상품 합산 한도(최대 8억원) 내 지원
- ☐ **(상환방식)** 최대 10년 분할상환(거치기간 최대 3년)
- ☐ **(보증비율)** 90%
- ☐ **(보증방식)** 위탁보증(지역신보기본 요건(체크리스트) 제시 + 은행자체 심사)
※ 대위변제부과금 및 위탁보증수수료 : 미적용
- ☐ **(소요재원)** 연간 출연규모 1,000억원(3년간 총 3,000억원)
- ☐ **(출연방식)** 개별출연*(운용배수 : 10배)
* 신보중앙회에 출연하고 지역신보별 보증공급량을 고려, 신보중앙회에서 지역신보에 정산
- ☐ **(출연액 분담기준)** 지역신보법 상 법정출연금 출연기준 대출잔액의 은행별 점유율에 따라 연간 1,000억원 분담(3년간 총 3,000억원)
※ 은행별 출연액에 비례하여 해당 상품 취급
- ☐ **(공급규모)** 연간 2만명, 대출 1.1조원 수준(보증 1조원)
- ☐ **(시행시기)** '25.7월*
* 은행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출시일정 변동 가능

4

은행권 컨설팅 제공

◆ 소상공인에게 주거대출은행 등이 금융·비금융 컨설팅을 제공

□ (개요) 소상공인이 은행을 통해 창업·운영·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

□ (지원내용) 창업, 성장, 폐업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

■ (창업) 창업 상담·상권 분석 등 창업지원 컨설팅 제공

- 컨설팅 이수자에 금리 우대를 제공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, 컨설팅 이수자를 정책자금 우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

※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상품 이용시 0.2%p 이상 금리 우대(햇살론 119 등에도 적용)

■ (운영) 경영자문, 금융·세무·회계·법률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

※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, 정책금융기관 컨설팅 등 여타 컨설팅 제도와도 연계

■ (폐업) 폐업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을 위한 서비스 등

□ (대상) 창업·채무조정자 등 우선 지원 → 대상 점진적 확대

□ (방식)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, 공동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·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

* (예) 담당 지점을 통해 은행 지역별센터 또는 서금원 등 유관기관·외부전문기관 연결

→ 은행별 우선 시행 후 은행권 TF(은행연 주관)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공방안 마련(~'25.1Q)

※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등 '금융지원 3중세트'에 대한 홍보·안내 등도 협조

□ 이와 함께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을 통한 경영지원서비스 공급기능 활성화도 추진

○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 및 경영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

* 주문결제 플랫폼·지역관광 플랫폼,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식자재 주문서비스, 유동성 지원을 위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, 은행을 활용한 마케팅 및 플랫폼 데이터 통합조회 서비스 등

○ 카드 단말기 지원, 카드매출 바로입금 등 계열 금융사 연계 서비스도 검토하고, 중장기적으로는 복합금융상품 개발 추진

→ 은행권이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비금융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권 샌드박스 신청, 부수업무 신고 등 추진(~'25.1Q)